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6년 1월 19일
-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6년 1월 21일
- 라. 상정일자: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안 제5조 ~ 제7조)
 - 준용(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 및 건축물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선·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것으로,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이 정비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비 미흡, 해지 회선의 미철거 등으로 공중케이블 난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누전·감전·정전·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주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공중케이블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제1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2021~2025)』에 이어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이하 “제3차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제3차 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임.
 - 이에 따라 매년 지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미흡 등급 지자체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여 우수 등급 지자체에 재배정할 예정임.
 - 또한, 3차 계획 기간(5년간) 동안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총점 하위 약 10%(6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4차 중장기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비물량의 50%를 삭감하고, 이를 신규 참여 지자체 또는 서울·광역시 외 지역에 재배분할 계획임.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물량이 조정되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행정적 뒷받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 및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나 역할이 제한적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고, 민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전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공중케이블’과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개념을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일방적 정비가 아닌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는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 정비 구역의 실태조사, 정비 완료 후 평가, 홍보 및 민원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함.
- 안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의원, 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6조(협의회의 기능)는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민원 및 의견 제시, 정비 의뢰, 정비 추진을 위한 협조·지원 등의 기능을 규정하여, 협의회가 소통 창구이자 민관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의 회의 소집, 개최 주기, 의결 요건 등을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수시적 논의를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중앙정부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물량이 조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영등포구의 행정적 대응 역량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비의뢰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4
----------	-----

발의연월일: 2026. 1. 19.

발 의 자: 전승관 · 이성수 · 유승용
이순우 · 남완현 · 정선희
의원(6인)

1. 제안이유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안 제5조 ~ 제7조)
- 마. 준용(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전기통신사업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과정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 2.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준용)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